

ISSN : 2635-6104

#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15 / 2019 Spring



북극학회  
Arctic Academy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15. 2019 Spring

발행일 : 2019년 3월 1일

인쇄일 : 2019년 3월 1일

발행인 : 한종만

편집위원 : 김정훈, 계용택, 박종관, 배규성,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발행처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kiseling@daum.net](mailto: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연자1길14 배재대학교 21세기관 448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17년 캄차트카 여름전경(예병환, 배규성 공동연구원 현지출장 중 촬영)

## 목 차

- ▶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 연구 (서현교) 1
  
- ▶ 포리스트 에네츠어(Forest Enets)의 역사와 절멸 원인 (서승현) 15
  
- ▶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기사 제목 내용분석:  
2014년7월~2018년12월 러시아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계용택) 28

##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 연구<sup>1)</sup>

서현교<sup>2)</sup>

### 【목 차】

- I. 서론
- II.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후속 ‘북극정책기본계획’
- III.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과 북극정책 모형
- IV. 결론

### <국문 요약>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 후 같은 해에 그 후속조치로 5년 단위 중기계획인 ‘북극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정부는 2018년에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여 국가 차원의 북극정책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5년 단위 계획의 중장기 방향성을 갖춰나가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국내 최대 규모 극지관련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서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리나라 북극정책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특징과 두 기본계획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북극정책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북극정책 모형을 기반으로, ‘북극정책기본계획’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간 차이점을 규명하여 정부의 북극정책의 변화방향을 검토하여, 이러한 북극정책의 이해관계자인 극지과학계, 업계 등의 입장에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북극이사회, 북극이사회 옵서버국, 북극정책기본계획,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북극정책 모형

1) 본 논문은 극지연구소의 2018년 창의연구사업(2018.3.1.~2019.2.28.)인 “극지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극지정책연구·지원 강화(PE18260)” 과제의 지원을 받아 작성됨.  
 2)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극지정책 전공), 책임기술원(연구기술직)으로 재직 중. 前 KOPRI 한국-노르웨이 극지연구협력센터장, UN산하 국제기구 UNU/IAS 연구원, 언론인 등 역임

## I. 서론

북극<sup>3)</sup>은 이전 세기에는 과학 활동이나 자원 등의 경제활동의 대상이 아닌 탐험의 대상이었다. 혹독한 기후환경과 첨단문명기술의 부족으로 이러한 탐험이 영토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동서냉전으로 인해 탐험은 더욱 어려워졌고, 북극권 국가들이 북극을 군사 및 안보구역으로 관리하는 수준이었다.<sup>4)</sup> 이후 당시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87년 무르만스크 선언(Murmansk Declaration)<sup>5)</sup>으로 북극권의 본격 개방과 북극권 환경보호 및 자원 공동개발 협력을 제시하였다. 이 선언은 북극 이슈를 국제적 의제로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6)</sup>. 이같은 제안에 힘입어 북극권 국가들도 1996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라는 정부간 포럼을 본격 출범시키고, 북극의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북극원주민 보호 및 지속가능성 등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였다.<sup>7)</sup>

이 북극이사회가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여 비북극권 국가의 참여를 열었는데, 북극에서 과학활동과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북극권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려는 아시아 대국들도 관심을 가져, 2013년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등이 동시에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후, 같은 해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북극정책인 ‘범부처<sup>8)</sup> 북극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이어, 2018년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이 후속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같은 북극정책이 도출되는 과정 속에서 국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수립이나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먼저 우리나라 북극정책 관련 기존 연구를 검토해보면, 북극 정책 내용의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부터 세부 분야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북극이슈 전반을 다룬 연구로, 김윤옥(2012)은 북극해의 주요 국제 이슈와 함께 북극권 및 아시아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동민 외(2010)와 문진영 외(2013)는 북극이사회의 태동과 역사,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북극권 국가별 북극정책동향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Valeriy P. Zhuravel(2016)은

3) 북극권(Arctic Circle)은 북위 66°30'에 위치한 북극 지역의 남쪽 한계선까지 지역으로, 하지에 낮이 24시간, 동지에 밤이 24시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권역으로 정의함.; 이재혁, “북극해의 수산자원과 한국의 수산업”,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서울 명지출판사), 2014.2., p228 참조; 기온, 수목생장선 등을 기준으로 하는 북극의 정의는 Donald R. Rothwell, *The polar reg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23. 참조

4) 김정훈, 백영준, “한국과 일본의 북극 연구 경향 및 전략 비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1(2), 2017.11. p. 113. 참조

5) 김종명, “러시아 군부의 정치적 위상과 통제”,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012.11., p. 92. 참조

6)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과 및 참여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4-11), 2014.12.12. p. 44. 참조

7) 서현교,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2(1), 2018.5., pp. 121~112. 참조

8) 범부처 북극정책기본계획에는 해양수산부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총 7개 관계부처가 참여

웹사이트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86&boardKey=22&articleKey=4638> 참조

한·중·일의 북극정책 비교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2013년 북극정책기본계획과 추진 현황을 과학 기술 및 항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예상하였다. 김정훈·백영준(2017)은 한국의 과학기술, 경제 등 북극정책 관련 시간별 성과와 함께 한일 양국간 북극연구정책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김현정(2015)은 2013년 북극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내용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문별 북극정책 연구로 김기순(2010)은 법제도적 관점에서 남극이 1959년 남극조약, 1972년 남극물개협약,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1991년 남극환경보호의정서 등 포괄할만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췄으나, 북극은 법제도가 형성되지 않아 북극이슈 해결을 위해 남극과 같은 포괄적이고 구속력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김경신(2008)은 북극의 상업적 이용 현안, 즉 영유권 분쟁, 대륙붕 확보, 항로 및 운항지원 등의 이슈를 다루고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남일 외(2011)는 북극해 항로와 둘러싼 에너지 개발과 선박·플랜트 수요, 에너지 수송 안보, 국내 물류거점 측면에서 현황 분석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엄선희(2010)는 북극 어장현장 및 국제규범의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북극해 어업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북극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연구부터 법·제도, 과학기술, 물류, 항로, 수산업 등 분야별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정부의 북극정책의 태동부터 최신 정책동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기본계획의 공통 유형에 기반한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을 제시한 후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 II.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후속 ‘북극정책기본계획(2013~2017)’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의 태동은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KOPRI)가 지난 2002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Svalbard Archipelago)의 니알슨(Ny-alesund) 과학기지촌에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개소하였다. 그리고, 이 기지를 기반으로 KOPRI는 외국의 연구인프라에 의존하지 않은 자주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성과를 냈다.<sup>9)</sup> 그리고 2009년 국내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Araon)이 건조되면서, 극지연구소는 2010년부터 매년 하계시즌 아라온을 활용해 북극탐사를 수행하며 연구성과를 배가시켰으며, 아라온 등의 연구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사와의 연구협력을 주도·강화하였다.<sup>10)</sup>

이같은 극지인프라 기반 연구성과와 향후 기여 계획 등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외교부는 2008년 5월 북극권 8개국 정부간 포럼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sup>11)</sup>에 옵서버 가입신청서를

9) 서현교,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역사 성찰과 발전 방향”, 김정훈 외, 『러시아 북극공간의 이해: 서북극권과 서시베리아의 지정, 지경 및 지문화적 접근』, (북극학회, 학연문화사), 2018.11., p. 498. 참조

10) 서현교,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역사 성찰과 발전 방향”, 김정훈 외, 『러시아 북극공간의 이해: 서북극권과 서시베리아의 지정, 지경 및 지문화적 접근』, (북극학회, 학연문화사), 2018.11., p. 500. 참조

제출했으며, 그해 11월 임시(Ad-hoc) 옵서버가 되었다.<sup>12)</sup>

이후 후속 연구성과 실적 제출, 북극이사회 산하 워킹그룹/TF 회의 대응, 북극권 국가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의 옵서버 가입 정당성의 설득 작업 등을 병행하여 2013년 5월 스웨덴 북극 탄광도시인 키루나(Kiruna)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함께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다.<sup>13)</sup> 이같은 정식옵서버 지위의 후속조치로 해수부는 같은 해 12월 범부처 ‘북극정책기본계획’<sup>14)</sup>을 발표하였다.

동 북극정책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과 3대 정책 목표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북극 파트너십 구축,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 강화, 경제영역의 참여를 통한 북극 신산업 창출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4대 전략과제와 그 아래 12개 추진과제가 <표 1>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1> 해수부 발표 범부처 북극정책기본계획 개요<sup>15)</sup>

비 전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
정책 목표	❶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북극 파트너십 구축 ❷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 강화 ❸ 경제영역의 참여를 통한 북극 新산업 창출
4大 전략과제	12대 추진과제 (‘13-’17)
국제협력 강화	▪ 북극이사회 관련 활동 확대 ▪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 민간협력 활성화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 기지 등 인프라 활용 연구 활동 확대 ▪ 연구 활동 기반 확충 ▪ 기후변화 연구 강화 ▪ 북극 및 북극해 공간정보 구축
북극 비즈니스 발굴 · 추진	▪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 항만 협력 ▪ 자원개발 협력 및 조선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 수산자원 협력

11) 문진영, 김윤옥, 서현교, 『북극이사회 정책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자료 14-06), 2014, pp. 16~19. 참조

12) 서현교, “북극이사회, 북극의 협력마당”, 이유경 외, 『아틱 노트(Arctic Note)-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극지연구소, 지오북), 2018.1., p. 300. 참조: 서현교,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역사 성찰과 발전 방향”, 김정훈 외, 『러시아 북극공간의 이해: 서북극권과 서시베리아의 지정, 지경 및 지문화적 접근』, (북극학회, 학연문화사), 2018.11., p. 501. 참조

13) 현재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 총 13개국이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국가로 가입되어 있음. 서현교, “중국어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2(1), 2018.5., p. 122. 참조




14) 서현교,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 고찰과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0(1), 2016.5. p. 165~166. 참조: 서현교,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역사 성찰과 발전 방향”, 김정훈 외, 『러시아 북극공간의 이해: 서북극권과 서시베리아의 지정, 지경 및 지문화적 접근』, (북극학회, 학연문화사), 2018.11., p. 502. 참조

15) 웹사이트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86&boardKey=22&articleKey=4638> 참조

<b>제도기반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지정책 근거법령 제정</li> <li>▪ 극지정보센터 구축</li> </ul>
----------------	---

이 <표 1>에서와 같이, 북극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크게 ‘국제협력 강화’에 해당하는 북극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과학연구 강화’, ‘경제·비즈니스 창출’에 해당하는 북극신산업 창출 등이다. 그리고 이를 정책목표를 구현할 4대 전략과제에서도, 북극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제협력 강화’, 북극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조사·연구 강화’ 그리고 북극권 ‘경제·비즈니스 발굴’ 등의 3대 전략과제를 앞서 3대 정책목표와 같은 순서로 제시하여 각 정책목표에 상응시켰다. 그리고 이 3대 전략과제를 강화하고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기반 확충’(기반구축)을 전략과제에 추가하여 4대 전략과제를 완성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국제협력 강화’, ‘과학연구 강화’, ‘경제·비즈니스 창출’이 우리나라의 3대 정책목표이자 전략과제이고, 이러한 3대 목표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전략과제에 추가되어 북극정책기본계획의 3대 전략목표와 4대 전략과제가 완성된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표 2>와 같다.

<표 2> 북극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과제 간 상호연계성<sup>16)</sup>

3대 정책목표	4대 전략과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북극 파트너십 구축 (= 국제협력 강화)	1.국제협력 강화		4. 제도기반 확충 (기반구축)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 강화(= 과학연구 강화)	2.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		
경제영역의 참여를 통한 북극신산업 창출 (= 경제·비즈니스 창출)	3.북극 비즈니스 발굴·추진		

\*2013년 기본계획 상의 정책 순서: 국제협력, 과학연구, 경제·비즈니스 순

### III.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과 북극정책 모형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한중일 외교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운영(16년~), ‘중양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sup>17)</sup>에 원초서명국으로 참여 등의 국제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6년부터 매년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sup>18)</sup> 개최, 2015년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sup>19)</sup> 출범 및 운영, 한국 북극

16) 3대 정책목표를 통해 본 ‘북극정책기본계획’ 상의 정책 순위는 국제협력, 과학연구, 경제/비즈니스 순임.  
 17) ‘중양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은 북극해 인접 5개국(미, 캐, 러,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와 한, 중, 일, EU 및 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 모여 6차에 걸친 회의 끝에 최종 문안이 2017년 11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타결됨. 그리고 이 10개국 대표가 2018년 10월에 대표가 모두 모여 서명함.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635](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635)  
 18) 우리나라 해수부와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주에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북극이슈 컨퍼런스로 정책, 과학기술, 해운·물류, 에너지·자원 등 일자별 다양한 주제로 1주일간 개최함. 2018년의 경우 국내외에서 1,000여명이 참가함. 2018년 행사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아카데미(Korea Arctic Academy)<sup>20)</sup> 사업 수행 등 다양한 사업 실적도 창출하였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제2 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북극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법제(일명 북극활동진흥법)가 국회에 계류되어 법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부 정책에서 당초 제시한 기한 내에 목표에 이루지 못하였다. 해수부는 이같은 미완의 계획과 신규 계획들을 종합하여 기존의 북극정책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인 범부처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을 2018년 7월 발표하였다. 우선 기존의 북극정책기본계획에는 7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데 반해 본 계획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가되어 관계부처가 8개로 늘어났다.

또한 이 계획에서 정부는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로 비전을 설정하여, 2013년 북극정책기본계획 상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와 크게 변화를 꾀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기본계획 비전은 2013년의 비전(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에 ‘기회’라는 단어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2013년의 계획보다 북극에서의 ‘경제적인 기회’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포시켰다.

<표 3> 2018년 범정부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개요<sup>21)</sup>

비전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	
정책 목표	① 북극항로 이용 등 북극권 경제 진출 증진	
	②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북극 거버넌스 참여 확대	
	③ 북극 현안 대응능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4 대 전략과제		13대 추진과제 ('18-'22)
①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① 북극 진출 협력기반 구축 ②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 ③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④ 수산 협력	
②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⑤ 북극이사회 협력 강화 ⑥ 국제협약체 참여 확대 ⑦ 북극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③ 인류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⑧ 북극 환경 관측활동 강화 ⑨ 북극 기후분석과 미래 환경 대응 ⑩ 연구·활동 기반 확충	
④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⑪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	

[http://apw.koreapolarportal.or.kr/APW/html/overview\\_k.html](http://apw.koreapolarportal.or.kr/APW/html/overview_k.html)

19) KoARC은 우리나라 국내 북극관련 연구기관 간 과학-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융복합연구 기획·발굴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제1차 범정부 북극정책기본계획(21013-2018)에 따라 지난 2015년 출범함. 국립외교원을 비롯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30개 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한 북극이슈 발굴·대응의 싱크탱크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 계용택,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015.11. p.40. 참조

20) 북극권 국가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북극교육 프로그램.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가 8개 북극권국가와 국내 대학 소속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국내에서 개최함.

21) 웹사이트 [http://www.kdi.re.kr/policy/ep\\_view.jsp?idx=179137&&pp=100&pg=2](http://www.kdi.re.kr/policy/ep_view.jsp?idx=179137&&pp=100&pg=2) 참조

역량 강화	⑫ 전문인력 양성 ⑬ 북극 홍보 강화
-------	-------------------------

그리고,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3대 정책목표로 ‘북극항로 이용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 경제·비즈니스 창출),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북극 거버넌스 참여 확대’(= 국제협력 강화), ‘북극 현안 대응능력 강화와 및 국제사회 기여’(= 과학연구 강화)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전과 정책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 앞서 2013년의 북극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유형을 유지하였다. 이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은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경제·비즈니스 창출),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국제협력 강화),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과학연구 강화),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13년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비즈니스 창출, 국제협력 강화, 과학연구 강화가 3대 정책목표이자 전략과제이면서, 이 3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전략과제에 추가되어 2018년 기본계획의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과제가 구성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의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과제 간 상호연계성<sup>22)</sup>

3대 정책목표	4대 전략과제		
북극항로 이용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 경제·비즈니스 창출)	1.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 경제·비즈니스 창출)	←	4.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 기반구축)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북극 거버넌스 참여 확대 (= 국제협력 강화)	2.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국제협력 강화)	←	
북극 현안 대응능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 과학연구 강화)	3.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과학연구 강화)	←	

\*저자 직접 작성

한편, 2013년의 북극정책기본계획과 2018년 북극활동기본정책의 3대 정책목표를 개념적으로 비교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두 기본계획 모두 3대 정책목표로 국제협력 강화, 과학연구 강화, 경제/비즈니스 창출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8년 정책목표에서는 경제·비즈니스 창출, 국제협력 강화, 과학연구 강화의 순으로 순위를 배치하여 기존의 2013년 기본계획의 국제협력 강화, 과학연구 강화, 경제/비즈니스 창출 순으로 볼 때, ‘경제/비즈니스 창출’이 맨 앞으로 배치되어 최우선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표 5> 북극정책기본계획(2013)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 간 3대 정책목표 순위

순위	북극정책기본계획(2013)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
----	----------------	------------------

22)3대 정책목표를 통해 본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상의 정책 순위는 경제/비즈니스, 국제협력, 과학연구 순임.

1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북극 파트너십 구축 (국제협력 강화)	북극항로 이용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경제/비즈니스 창출)
2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 강화 (과학연구 강화)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북극 거버넌스 참여 확대 (국제협력 강화)
3	경제영역의 참여를 통한 북극 신산업 진출 (경제/비즈니스 창출)	북극 현안대응능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과학연구 강화)

\*저자 직접 작성

또한 <표 4>와 앞의 <표 2>에서 제시된 두 기본계획 간의 4대 전략과제를 비교해보면, 2013년 기본계획에서는 국제협력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과학연구 강화, 경제·비즈니스 창출, 기반구축의 순으로 제시한데 반해, 2018년 기본계획에서는 경제·비즈니스 창출, 국제협력 강화, 과학연구 강화, 기반구축 순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제/비즈니스를 최우선에 배치하고 나머지 순서는 그대로 놓았다. 이는 정부가 2013년과 달리 2018년 기본계획에서는 정책목표는 물론 전략과제에서도 경제·비즈니스 창출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북극정책기본계획(2013)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 간 4대 전략과제 순위 비교

순위	북극정책기본계획(2013)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
1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 경제·비즈니스 창출)
2	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 (= 과학연구 강화)	책임있는 오픈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 국제협력 강화)
3	북극 비즈니스 발굴·추진 (= 경제·비즈니스 창출)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 과학연구 강화)
4	제도기반 확충 (= 기반구축)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 기반구축)

\*저자 직접 작성

한편, 2013년 북극정책기본계획과 2018년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간 세부 추진과제를 4개 주제별로 나눠 비교 제시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북극정책기본계획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간 세부추진과제 비교<sup>23)</sup>

4대 전략과제	북극정책기본계획(2013) 상의 세부 추진과제(12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 상의 세부 추진과제(13개)
경제·비즈니스 창출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항만 협력 ·자원개발 협력 및 조선·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수산자원 협력	·북극 진출 협력기반 구축(9- Bridge)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수산자원 협력

23) 본 표는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주제 순서(경제/비즈니스-국제협력-과학연구-기반구축 순)에 맞춰 북극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순서를 재배치한 것임. 표에서 볼드체는 양 기본계획간 주제가 중복되는 부분임.

국제협력 강화	·북극이사회 관련 활동 강화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북극이사회 협력 강화 ·국제협의체 참여 확대 ·북극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북극정책협력회의 등)
과학연구 강화	·기지 등 인프라 활용 연구·활동 확대 ·연구·활동 기반 확충 ·기후변화 연구 강화 ·북극 및 북극해 공간정보 구축	·북극 환경 관측활동 강화 ·북극 기후분석과 미래 환경 대응 ·연구·활동 기반 확충
기반구축	·극지정책 근거법령 제정 ·극지정보센터 구축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 ·전문인력 양성 ·북극 홍보 강화

\*저자 직접 작성

이 <표 7>에서 2013년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2018년 기본계획 상에서 신규로 추가된 세부과제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4대 전략과제 중 ‘경제/비즈니스 창출’에서는 2013년 기본계획과 대비하여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9-Bridge 정책 추진이 추가되었다. 즉, 러시아 조선소 현대 지원과 극한지 공학 R&D추진으로 조선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자원개발 협력에서는 지질자원연구원이 건조추진 중인 ‘탐해 3호’를 통해 북극연안국 EEZ권 밖에서 북극 자원·에너지 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양 기본계획에서 수산자원 협력이 동일하게 포함되었으나, 2018년 기본계획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후속조치로 북극해 수산자원공동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

4대 전략과제 중의 ‘국제협력 강화’에서는 북극씨클한국포럼 개최<sup>24)</sup>, 북극권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내 플랫폼으로서 ‘북극정책협력회의’ 구성 등이 포함되었다. 4대 전략과제 중의 과학연구 강화에서는 기존 연구사업 후속 사업 추진 외에 극지인프라 개방과 범국가적 공동활용방안 마련이 신규로 담겼다.

마지막으로 4대 전략과제 중 기반구축에서는 극지연구자 지원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지원 확대, 2015년 출범한 북극연구컨소시엄을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이 전문인력 양성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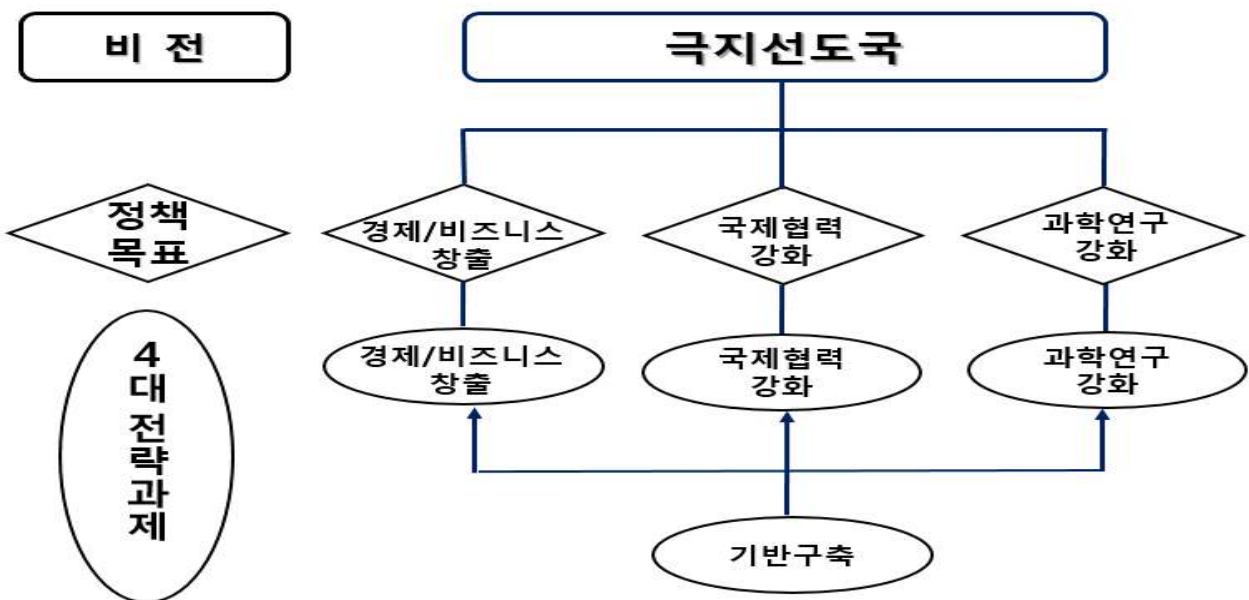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이후의 2013년 수립된 북극정책기본계획과 2018년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북극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두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일정한 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극지선도국’이라는 국가 비전

24) ‘북극씨클한국포럼’은 외교부와 해수부, 극지연구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씨클 사무국이 ‘아시아 북극을 만나다: 과학, 연계성 및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여 2018년 12월 7~8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개최함. 이번 행사는 2018북극협력주간 행사의 연계 행사로 열려 국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가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교부 웹사이트 의 보도자료 참조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801](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801)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과제, 그리고 그 전략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용상에서도 두 기본계획의 3대 정책목표에서 물류, 항만 등 신산업을 포괄하는 '경제·비즈니스 창출', '북극이사회' 등 협력을 포함하는 '국제협력 강화', 북극 기후변화연구와 연구인프라 구축을 포괄하는 '과학연구 강화'를 내세웠고, 이 3대 정책과 각각 연결된 3대 전략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대 전략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국내 법적 기반 마련 등의 '기반구축'이 추가 전략과제로 제시되어 총 4대 전략과제를 완성하였다. 이를 유형화한 모형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모형



#### IV. 결론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후 후속조치로 5년 단위 중기 기본계획인 북극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2018년 그 두 번째 중기 계획으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두 기본계획 모두 우리나라의 '극지선도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경제·비즈니스 창출', '국제협력 강화', '과학연구 강화'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를 각각 상호 대응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비즈니스 창출, 국제협력 강화, 과학연구 강화의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 인력양성, 홍보 등의 '기반구축'을 전략과제에 추가하여 총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2018년 기본계획이 2013년의 기본계획과 달라진 것은, 비전에서 '기회'를 추가하여 북극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강화했고, 3대 정책목표와 4대 정책과제에서도 2013년 기본계획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던 '경제·비즈니스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고, 실행과제에서도 역시 북극 경제·비즈니스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정

책적 입장 변화에 대해 향후 국제사회가 북극에서 한국의 활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나라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 획득의 결정적 기여를 한 우리나라의 북극 과학연구가 2018년 기본계획의 우선선위에서 경제·비즈니스 창출보다 후순위로 밀린 점도 염두해야 한다. 세종기지가 1988년 개소하여 극지연구 30년의 역사가 흘렀다. 지금까지는 극지과학계가 세종기지, 다산기지, 아라온 등 극지인프라 구축·운영과 극한환경을 극복하는 연구활동으로 국민에게 자긍심 제고와 극지연구의 위상을 높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부합시켜 기업이나 대학에서 할 수 없는 ‘고위험 도전 연구’(High Risk-High Return형 연구) 추진으로 세계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성과, 국민 삶의 복지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성과창출로도 정부와 국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sup>25)</sup>.

극지가 여전히 미지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도 극지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도전형 연구사업을 지원하여 NSC급의 세계적인 논문성과가 더욱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하고, 학문적 연구가 글로벌·지역 이슈 해결로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sup>26)</sup>

이와 함께 국내대학을 중심으로 형성·주도되고 있는 극지 인문·사회 및 정책연구, 그리고 극지 공학 연구 등의 새로운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중심의 연구사업이나 한국연구재단 등의 국책사업을 통한 연구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극지 기초·응용·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발전과 함께 세계 학계와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도 이끌어야 할 것이다.

25) 이와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18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국기과학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을 의결함. 동 방안에는 고위험 도전 연구 추진, 국민체감형 및 실용적 연구성과 창출 등 연구성과 및 실용화 중심의 혁신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문건 참고(아래 웹사이트 링크 참조)

[https://msit.go.kr/cms/www/m\\_con/news/report/\\_icsFiles/afiedfile/2018/08/01/\(%EC%95%88%EA%B1%B41\)%20%EA%B5%AD%EA%B0%80RnD%20%ED%98%81%EC%8B%A0%EB%B0%A9%EC%95%88\(%EC%95%88\).pdf](https://msit.go.kr/cms/www/m_con/news/report/_icsFiles/afiedfile/2018/08/01/(%EC%95%88%EA%B1%B41)%20%EA%B5%AD%EA%B0%80RnD%20%ED%98%81%EC%8B%A0%EB%B0%A9%EC%95%88(%EC%95%88).pdf)

26) 정부도 2018년 12월 극지연구소를 포함하여 과기계 출연연구소의 연구평가를 3년 기간의 단기성과 평가에서 5년 단위로 중장기 성과 평가로 전환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논문수 위주의 정량평가를 개선하여 정성 평가와 상대 평가를 강화기로 한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변화라 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3043700017?input=1195m> 참조

**<Abstract>**

After gaining the Arctic Council Observer status in 2013,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5 years' Masterplan for the Arctic policy (2013-2017) as a follow-up actions at the same year. Also, the 2<sup>nd</sup> Masterplan for the Arctic policy at the second term (2018-2022) was released in July, 2018.

This study analyzed Korea's Arctic Policies in terms of historical perspectives and the differences these between the 1<sup>st</sup> Masterplan (2013's version) and the 2<sup>nd</sup> Masterplan (2018's version) from policy vision to each action-plans. Also the study tried to develop the typical Korea's Arctic Policy Model.

After identifying Governmental-policy changes between 2013 masterplan and 2018 masterplan, the study deducted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based on change of policy priorities and policy contents.

Finally, considering the change of governmental Arctic policy trends, the study suggested the policy adjustments to domestic stakeholders (Research, Industries, Academia, etc).

**<Key Words>**

Arctic Council, Arctic Council Observer, 'The 1<sup>st</sup>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The 2<sup>nd</sup>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 Korea's Arctic Policy Model

## &lt;참고문헌&gt;

**한국어 자료**

- 계용택,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19(2), pp35-72, 2015.
- 김기순,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1號 (通卷 第116號), pp. 13-53., 2010.
- 김경신, “북극의 상업적 이용과 정책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해양수산』, (285), pp. 22~36. 2008.
- 김남일, 이현주, 정육상, “북극해 항로개발의 자원개발 및 에너지 안보적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1-2, 2011
-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과 및 참여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4-11), 2014.12.12. p. 44. 참조
- 김윤옥, “북극해 이슈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6. No.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2.
- 김종명, “러시아 군부의 정치적 위상과 통제”,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16(2), pp. 85-109, 2012.11.
- 김정훈, 백영준, “한국과 일본의 북극 연구 경향 및 전략 비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1(2), pp111-146, 2017.11.
- 문진영, 김윤옥, 서현교, 『북극이사회 정책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자료 14-06), 2014.
- 서현교(1),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2(1), pp 119~151, 2018.
- 서현교(2),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역사 성찰과 발전 방향”, 김정훈 외, 『러시아 북극공간의 이해: 서북극권과 서시베리아의 지정, 지경 및 지문화적 접근』, (북극학회, 학연문화사), pp. 497~507., 2018.
- 서현교(3),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 고찰과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20(1), pp. 145-172, 2016.
- 서현교(4), “북극이사회, 북극의 협력마당”, 이유경 외, 『아틱 노트(Arctic Note)-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극지연구소, 지오북), pp. 284-302, 2018.
- 엄선희, “북극해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 제 8권, pp 34~64, 2010.
- 진동민, 서현교, 최선웅, “북극의 관리체제와 국제기구: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32(1), pp 85~95, 2010.
- 이재혁, “북극해의 수산자원과 한국의 수산업”,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서울 명지출판사), pp 228-262, 2014.2.

**외국어 자료**

- Donald R. Rothwell, *The polar reg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ISBN-13 978-0-521-56182-2
- Hyun Jung Kim(김현정), Success in heading north?: South Korea's master plan for Arctic policy, *Marine Policy*, Volume 61, pp 264~272, 2015.
- Valeriy P. Zhuravel, “China, Republic of Korea, Japan in the Arctic”, *Arctic and North*, 2016 No.24., 2016.

**인터넷 자료**

국기과학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혁신방안



<https://msit.go.kr>

북극씨클한국포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801](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801)

북극정책기본계획(2013)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86&boardKey=22&articleKey=4638>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

[http://www.kdi.re.kr/policy/ep\\_view.jsp?idx=179137&&pp=100&pg=2](http://www.kdi.re.kr/policy/ep_view.jsp?idx=179137&&pp=100&pg=2)

북극협력주간

[http://apw.koreapolarportal.or.kr/APW/html/overview\\_k.html](http://apw.koreapolarportal.or.kr/APW/html/overview_k.html)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635](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635)

정부의 과기계 출연연 평가방식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3043700017?input=1195m>

## 포리스트 에네츠어(Forest Enets)의 역사와 절멸 원인

서승현(동덕여자대학교)

### I. 서론

에네츠어(Enets)는 러시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지구 (Krasnoyarsk Krai)의 이전의 타이미르 (Taimyr) 자치구 경계 내에 있는 남부 예니세이(Lower Yenisei)지역에서 사용된 북부 시베리아의 소멸해 가는 언어이다. 이 언어는 현재 절멸의 과정을 밟고 있다. 약 10명의 유창한 언어 구사자 만이 남아 있으며, 잠재적인 언어 사용자의 총수는 40명 이하이다. 모든 언어 사용자는 50세 이상 세대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지역 통계에 따르면 에네츠 출신 민족은 약 260 명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젊은 세대들을 모국어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에네츠어는 사모예드(Samoyedic) 언어의 북부 부류에 속하며, 우랄(Uralic) 어족의 어파(語派)에 속한다.(Siegl, 2013).

에네츠어에는 포리스트(Bai) 에네츠어와 툰드라(Tundra, Madu 또는 Somatu) 에네츠어라는 두 개의 방언이 있다. 이 방언들은 별개의 언어로 간주 될 수 있다. 포리스트 에네츠어는 두 에네츠 방언 중 작은 규모의 언어이다. UNESCO Atlas of the World's Languages in Danger (<http://www.unesco.org/languages-atlas/index.php>)에 따르면, 에네츠어는 치명적으로 위험에 처한 상태이고, 2005년 Гыцев는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언어사용자 만이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2006과 2007년 겨울의 조사를 기준으로 약 35명의 언어 사용자가 있으며, 두딘카(Dudinka)에 6명이 거주하고, 포타포보(Potapova)에 20명, 투크하르트(Tukhard)에 10명이 살고 있다. 가장 어린 언어사용자는 1962년에 태어났으며, 가장 늙은 사람은 1945년생이다. 이 언어사용자 중 많은 수는 삼중언어자로서 포리스트 에네츠어, 툰드라 네네츠어 및 러시아어에 능통하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툰드라 네네츠어를 선호한다([https://en.wikipedia.org/wiki/Enets\\_language](https://en.wikipedia.org/wiki/Enets_language)).

두 에네츠 방언은 음운론과 어휘 모두에서 다르다. 추가적인 언어 변이형태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에네츠 기록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모든 변이형태들은 툰드라 에네츠어 또는 포리스트 에네츠어에 귀속될 수 있다(Helimskij, 1985. 재인용).

### II.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최근 역사

1.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남아있는 언어사용자 및 그들의 영토 분포

본 논문에서는 포리스트 에네츠어 및 포리스트 에네츠인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언어 분류, 기본 사회 언어학적 데이터, 민족지학 및 역사적 조사 및 연구 대한 집중적인 개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극지역에 해당하는 북부 시베리아 사모예드(Samoyedic)어족인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마지막 언어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설명된 언어는 Siegl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타이미르 반도(Taimyr Peninsula)를 현장 조사하면서 진행한 문서화 작업 중 발견한 다양한 포리스트 에네츠어에 관한 언어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다. 사실, 포리스트 에네츠어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15-20년 전에 부모 세대의 언어사용자들이 사망하면서 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불행히도 포리스트 에네츠어가 회복 불능의 시점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Siegl(2013)에 따르면, 잠재적인 언어사용자의 수는 약 40명이지만, 유창하거나 언어 소통이 겨우 가능한 에네츠인은 12명 미만이다. 그나마 50세 이상의 포리스트 에네츠인(Forest Enetses)만이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며, 가장 젊은 잠재적 언어사용자도 40세가 넘었다. 오늘날, 최후의 포리스트 에네츠 언어사용자의 대다수는 타이미르 반도의 타이미르시 구역(Taimyr Municipal District, Таймырский (ненецко-долган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에 거주하고 있다. 타이미르시 구역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Krasnojarskij kraj,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에 속한다. 포리스트 에네츠어 사용자는 시 구역의 수도인 두딘카(Dudinka, 69°24 N, 86°1 E)와 두딘카의 남쪽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예니세이(Yenisei)의 오른쪽 제방에 위치한 포타포보(Potapovo, 68°41 N, 86°1 E)에 살고 있다. 두딘카와 포타포보는 모두 타이미르시 구역의 외곽 지역인 두딘스키 지구(Dudinskij rajon, Дудинкский район)에 있다.

<지도 1> 20세기 Forest 에네츠 영토(Василев, 1963)



## 2. 초기의 역사에서 포리스트 에네츠인들

러시아인들과 에네츠인들 사이의 첫 번째 긴밀한 접촉은 제정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확장하기 시작한 17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분리파 교도<sup>1)</sup>(Old Believers)의 돌간에 대한 영향력이 문서에 잘 남아 있기 때문에, 분리파 교도와 사모예드족 (Samoyeds) 사이의 초기 접촉이 가능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17세기 초반에 타즈강 (Taz River) 하류에 만가제야(Mangazeja, Мангазея) 요새를 건설하고 그 후 몇 년 동안 러시아 황제 (Russian Czar)가 새로운 백성들에게 모피 공물제를 도입한 이후에 러시아인과 에네츠인 사이의 최초의 명확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 타즈강을 통하여 시베리아 동부로 물자를 수송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요새인 투루한스크(Turuxansk, Туруханск)가 그 지류 통구스카(Lower Tunguska, Нижняя Тунгуска)강어귀의 예니세이에 세워졌습니다. 그 위치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투루한스크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와 극동 정복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만가제야 요새는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갔다. 1672년 투루한스크는 도시로 지정되었고, 러시아 황제의 명령에 따라 만가제야 요새에 남아있던 나머지 주민들이 그곳으로 보내졌다. 이 강제적인 재정착 이후에 투루한스크가 '새로운 만가제야(New Mangazeja, Новая Мангазея)'로 개명 되었어야했으나, 투루한스크라는 이름이 바뀌지 않고 남아있었다(Müller II 99). 만가제야 요새와 투루한스크는 모두 모피 공물을 모으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토착민들을 파악하는 세무 기록표가 만들어졌다. 많은 세금 목록을 잃어 버렸지만 여러 명의 소비에트 민족학자가 상당수의 세금 목록을 보존하고 분석했다(Долгих, 1970; Василев, 1979). 현존하는 세금 목록은 툰드라 에네츠와 포리스트 에네츠의 씨족, 이름, 그리고 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Долгих는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복 당시 에네츠인의 수는 약 3,100명 이라고 추정했다(Долгих, 1970: 116). 그러나 러시아인이 도착한 직후에 질병이 이미 발생했으며 만가제야의 사모예드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된 유행병은 1642년에 발생했다(Müller III 86). 19세기 초반부터 타이미르 반도와 때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여러 러시아 지리학자와 여행자들에 의해 기술되었다. 서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잘 알려진 묘사는 1840년대 알렉산더 폰 미덴도르프(Alexander von Middendorff)와 1840년대 후반 카스트렌(M. A. Castrén)이 수행한 탐험 후에 나타났다(최근 설문 조사는 Tammiksaar and Stone 2007 참조). 포리스트 에네츠인들의 전통적인 영토에 관한 모든 기존 데이터는 17세기와 18세기에 포리스트 에네츠족은 남쪽에서 훨씬 더 살았으며 타이미르 반도를 향한 그들의 여행은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민족학 관련 출판물은 소위 '포리스트 에네츠족 문화의 남부 요소'를 다루고 있다(Долгих, 1970: 221-240, Василев, 1979: 29-45).

살아있는 언어로서의 포리스트 에네츠의 쇠퇴는 20세기 포타포보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1960년대 초반까지의 포타포보 마을 역사가 Василев(1963)에 포함되었지만, 1960년 이후의 기간에는 비교할만한 것이 없다.

1) 라스콜리니키에 소속하는 사람

이시기의 사건은 Siegl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재구성되어 있다. 포타포보 자체의 역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20세기 이전에 대해서는 막연한 정보만 존재한다. 포타포보 형성의 공식 날짜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관련정보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1881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온 알렉산드르 이바노프(Aleksandr Ivanov)라는 상인이 나중에 포타포보가 될 이곳에서 겨울 캠프를 지었다. 이 상인은 탐욕스럽고 이 지역의 토착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한다. 1886년에 포타포보라고 불리는 혁명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아직 이름이 없는 이곳으로 추방되었다. 이 용감한 혁명가는 토착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토착민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 혁명가는 곧 다가올 제정시대가 막이 내리고 나면 토착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약속했다. 토착민들은 이 약속을 소중하게 받아들였고, 그의 비전과 그의 선행으로 인해 그들은 혁명가 포타포보의 이름을 따서 아직 이름이 없는 그곳을 포타포보라고 명명했다. ...."(Siegl, 2013: 48)*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간에 대한 Василев의 설명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논쟁에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포타포보 주변의 대다수 지역은 두 언어로 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타포보 주변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포리스트 에네츠인들과 툰드라 네네츠인들 이었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당시 포타포보 시내 는 소수의 집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을 인구는 러시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포타포보의 최근 역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도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20년대 후반에 최초의 집단농장 콜호즈(Kolkhoz)와 초등학교가 개설되어 처음에는 러시아 어린이들만을 교육시키다가 이후에는 모두에게 개방되었다. 1935년에 Kuctt-baza<sup>2)</sup>가 생겨났고 그 후에 응급치료 기관이 생겼다. 그러나 포타포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인구 통계학적 충격은 2차 세계대전 도중과 이후에 발생했다. 1942년에 레닌그라드 주(州)에서 온 많은 불가 독일인과 핀란드 사람들이 포타포보로 추방되었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은 추방자들이 도착한 후에야 실제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1950년 두딘카(Dudinka)의 수도에서 포타포보로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 향로가 운영되기 시작하여 일년 내내 더욱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개선된 운송 수단을 도입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트해 지역 출신의 추방자들이 포타포보에 도착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소련 전체에 걸쳐 미래 전망이 어두운 마을을 폐쇄하는 정책이 포타포보의 환경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다. 인근에 있는 마을인 니콜스크(Nikolsk)와 한타이카(Xantajka), 두 곳이 폐쇄되었고 그 곳의 주민들은(주로 불가 독일인과 러시아인) 포타포보에 재정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어느 시점에 포타포보에 모피 농장과 유제품 농장이 열렸다. 소련 당국 정책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다른 소련사회주의연방공화국 출신의 식민지 주민들이 도착했다. 순록 집단들이 이미 2차 세계대전이전부터 존재해오기는 있었지만,

2) 문화적, 정치적 선동을 위한 문화적 기반

포타포보 주변에 있는 툰드라 지역에도 또한 여러 개의 순록 집단이 있었다. 1960년대 초 코미 순록 집단은 수천 마리의 순록을 자말 자치구(Jamal Autonomous Region)에서 포타포보 주변의 순록 집단으로 이동시켰다. 지방의 현지 수용력이 더 이상이 거대한 새로운 순록 집단을 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간(Dolgan)의 여러 순록 목부(牧夫)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타이미르 반도의 동부 지역(아마도 하탄가(Xatanga) 지역)에서 포타포보로 이주했다. 결국, 순록 떼들을 이동시킨 코미 순록 목축업자 몇 명은 포타포보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1960년대 말 포타포보에는 약 500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이 숫자는 1980년대 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포타포보가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등록된 모든 주민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Василев(1963)는 1950년대 후반 토착민들은 보통 툰드라 지역에 살았고 아주 가끔 마을에 와서 보급품을 보충하고 지역 기숙학교에 있는 자녀들을 방문하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Василев가 지적했듯이, 몇몇 토착민 가족들은 유목민을 포타포보의 영주 거주자들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된 당국의 계획에 따라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수여 받았다. 1960년대 포타포보의 민족지도는 시베리아의 다른 대부분 지역보다 훨씬 다채롭다고 Василев(1963)는 주장하였다. 민족에 대한 담론은 포타포보에서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대한 민족적 상황의 전반적인 개요를 알기가 어렵다.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오래된 집단 농장 물품 기록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 국적의 순위는 Siegl의 언어 컨설턴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표 1> 1960년대 초 포타포보의 민족 구성(Siegl, 2013)

다수자들의 국적	러시아인, 불가 독일인, Forest 에네츠인, Tundra 네네츠인, 예벤키인
소수자들의 국적(한 가족에서 세 가족 혹은 개인 몇 명)	핀란드인(인그리안인), 셸쿠프인, 한국인, 코미인, 느가나산인, 돌간인, 벨로루시인, 우크라이나인, 라트비아인, 추바시인, 시베리아 타타르인, 흑해 그리스인, 에스토니아인, 리투아니아인(?), 칼미크인(?)

위의 표를 보면 포타포보가 1950년대 이래로 다양한 국적을 수용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포타포보의 사회-언어학적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툰드라 네네츠어는 포타포보 주변의 툰드라 지역을 공통어(lingua franca)로 지배했지만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타지방 주민들의 유입은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따라서 새로운 공통어로서 러시아어가 부상 한 것은 사회 및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포타포보에서의 삶을 동반한 강제 추방의 결과였을 뿐이다.

### 3. 포리스트 에네츠어 및 이웃 언어들

공간적인 개념 차원에서 포리스트 에네츠어는 하나의 개별 언어로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언어들로 둘러싸여있다. 1950년대부터 접촉 언어로서 러시아어가 가장 많이 사용 되었지만, 사실은 툰드라 네네츠인들이 18세기에 이 지역에 도착한 이래로 예니세이강 하류 지역을 지배했던 툰드라 네네츠어를 러시아어가 대체했던 것이다. 툰드라 네네츠어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툰드라 네네츠어에서 차용된 어휘들이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어휘에 반영된다. 툰드라 네네츠어와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인하여 포리스트 에네츠인들 사이에는 이중 언어사용자가 많이 있다. 따라서 툰드라 네네츠어와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강한 유대감 때문에, 포리스트 에네츠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에네츠인들도 툰드라 네네츠어를 잘 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구사력을 보존하고 있다. 그들의 경우, 그러한 구사력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습득되었다. 20세기에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전통적인 고향은 남쪽의 예벤키족들(Evenkis)와 돌간족들(Dolgans)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한동안은 어떤 언어적 접촉의 직접적인 흔적도 확인할 수 없었다. 타이미르 지역에 러시아어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혼합어(Taimyr Pidgin Russian)인 'Govorka'가 예벤키족(Evenkis)을 포함한 비(非) 사모예드(Samoyedic) 민족 사이의 의사소통에 1950년대까지 사용되었다는 좋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초기에는 포리스트 에네츠인들이 타이미르 반도 (Taimyr Peninsula)의 남쪽을 떠돌아 다녔으며 18세기까지 대부분이 케트족(Ket)<sup>3)</sup>인 예니세이강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Yeniseian)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포리스트 에네츠인들과 예니세인들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포리스트 에네츠인들은 예니세인들로부터 어휘를 차용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Siegl 2008, 2012b).

### 4. 타이미르반도 토착민들 사이에서 에네츠인들

공식적으로 타이미르 반도에는 다섯 민족의 원주민이 보고된다. 돌간족(Dolgans, 투르크족)이 5517명, 툰드라 네네츠족(사모예드족) - 3486명, 느가나산족(Nganasans, 사모예드족) - 749명, 예벤키족(Evenkis, 퉁구스족) - 270 명, 에네츠족(Enetses, 사모예드족) - 168명이다. 행정적인 면과 통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포리스트 에네츠인들과 툰드라 에네츠인들은 공식 데이터에서 에네츠인으로 취급되지만 민족지학적 관점과 언어학적 관점 모두에서 그들을 별개의 민족으로 구분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포리스트 에네츠어 사용자의 대다수는 포타포보와 두딘카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통계는 에네츠어 사용자들이 다른 마을에도 거주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5. 포리스트 에네츠인들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1989년 실시된 인구 조사의 일부 사회언어학적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지만, 포리스트 에네츠어

3) 케트족은 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중·하류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케트어(예니세이오스타크어)를 사용한다. 케트어는 예니세이어족에 속해 있다. 1930년대에는 로마자에 바탕을 둔 문자를 사용했으며 1980년대에는 키릴 문자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문자로 바꿨다.

와 툰드라 에네츠어를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언어학적 용도로는 유용하지 않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러시아 지역 행정 수준에서 수집된 적이 없었다. 2008년 여름에 Siegl은 41명의 잠재적인 언어사용자의 데이터를 모았다. 그중 몇몇은 현재 이미 죽었다. '잠재적인 언어사용자'라는 영역은 포타포보 기숙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포리스트 에네츠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포리스트 에네츠어와 툰드라 에네츠어를 이중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 세대의 언어 사용자는 또한 러시아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포타포보의 기숙학교에 입학한 마지막 세대였다. 41명의 포리스트 에네츠어 사용자는 모두 40세 이상이었다. 중급 및 유창한 언어 구사력은 50세 이상인 개인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나이 많은 포리스트 에네츠어 사용자는 현재 60대 중반에 다다른다. 현재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인구동향 특성에 따르면(Pika 1999, Пивнева & Функ 2005(eds.)), 한 언어가 영원히 사라지기까지는 분명 한 세대가 걸리는 문제이다. 어떤 중급 수준의 언어사용자도 40세 미만의 세대는 없다. 약 30세의 두 사람만이 언어에 대한 수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Siegl은 2006-2008년에 5명의 유창한 언어사용자와 정기적으로 작업을 했다. 2011년에 두 명의 새로운 컨설턴트가 그녀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급 수준 언어사용자의 정확한 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잠재적인 대다수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III.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절멸과정과 그 요인

#### 1. Potapovo의 동화 및 동질화

2차 세계대전 후, 포타포보는 새로운 공통어를 필요로 했다. 주민들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마을에서는 이 새로운 공통어가 필연적이었던 반면에, 러시아어의 부상은 그것들이 추방자들의 고유 언어이든 다른 새로운 전입자들의 언어 이든 간에 모든 지역 언어의 멸절을 가져왔다. 현재 포타포보는 기능적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유창한 구사력은 45세 이상의 세대에서만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사회 문제, 알코올 중독 및 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해 그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포타포보 시내와 그 주변의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감소에 관하여 말하자면 필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인 기숙학교, 결혼 규칙의 상실과 새로운 다른 민족 간의 결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에트 생활의 새로운 방식 등이 광범위하게 에네츠어 사용 기피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 2. 기숙학교의 역할

비록 1920년대 후반에 포타포보에 초등학교가 개교되었지만, 1930년대 원주민 자녀가 마침내 입학하기 전까지 그 초등학교는 처음에는 러시아 어린이들만을 위해 교육을 시행했다. 1960년에 101명의 어린이가 이 지역 학교에 다녔다. 그들 중에 47명은 토착 소수민족 출신이었고 이들은 기숙학교에서 계속 살았다(Васи́лев, 1963: 65). 보통 원주민 자녀들은 기숙학교에 입학 했을 때 러시아어를 전혀 몰랐다. 포타포보에 왔을 때 아직 러시아어를 말하지 못한 (또는 아주 서툴게 말한) 많은 볼가 독일인들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독일인들에 관해서는, 포타포보에서 태어



난 이민 1세대는 완전히 러시아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모든 원주민 아이들은 소련 북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수민족 언어 사용이 금지된 기숙학교에서 몇 해를 보냈다. 비록 아이들이 모국어로 말하는 것이 제재 당했지만, 육체적인 체벌은 가해지지 않았으며, 적어도 공개적으로 지적당하지 않았다. 원주민 아이들은 툰드라에서 짧은 여름휴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국어 구사력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학교 수업은 러시아어로 진행되었고, 1930년대 이래 툰드라 네네츠족과 예벤키족(Evenki)을 위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재가 존재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 타이미르 반도에서 원주민 모국어가 가르쳐지지 않았다(Siegl, 2013). 포타포보에서는 소련 시대동안 기숙학교에서 원주민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학교는 여전히 운영되는 반면, 학제는 8년으로 축소되었고 수 년 전에 기숙학교 운영을 중단했다.

### 3. 결혼 규칙의 상실과 새로운 타민족간의 결혼

원주민의 결혼 규칙은 Долгих(1962 : 221-224)에 기술되어있다. 다른 민족과의 광범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 포리스트 에네츠인들은 자신들끼리의 결혼이나 포리스트 에네츠인과 툰드라 네네츠인 간의 결혼을 분명히 선호했다. 그러나 툰드라 네네츠인과 포리스트 에네츠인의 결혼은 보통 툰드라 네네츠어의 우위를 가져 왔으며 20세기 초 포리스트 에네츠어 사용자의 감소를 가속화했다. 그러나 족외혼(族外婚)에 대한 선호를 기술한 Долгих에 의해 문서화된 결혼 규칙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결혼 규칙의 재조정에 대한 이유는 19 세기에 발견 될 수 있다는 암시가 있다. 전쟁과 전염병이 모두 포리스트 에네츠 인구를 크게 감소 시켰으므로 타민족간 결혼이 정말로 오래된 현상인지는 의문스럽다. 마지막 언어사용자의 세대에 관해서는, 그들은 단일 언어인 포리스트 에네츠어나 이중 언어인 포리스트 에네츠-툰드라 네네츠어 가족 중 하나로 태어났다. 이러한 양상은 1960년대에 갑자기 끝났으며, 포리스트 에네츠어 마지막 유창한 사용자 세대에서 단지 두 건의 에네츠인간 결혼이 문서화 될 수 있었다. 다른 민족과의 결혼 (예: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돌간인, 예벤키인 또는 코미인과의 결혼)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가져왔지만, 놀랍게도 마지막 유창한 언어사용자들 중 상당수는 결혼 한 적이 없었다. 혼성 결혼으로 태어난 어린이들은 단일어인 러시아어로 키워졌다. 반면에 포리스트 에네츠인간 결혼으로 태어난 어린이는 최소한의 수동적인 모국어 구사력(비록 매우 제한적 이긴 하지만)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세대는 해당 지역의 단일어 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 4. 새로운 삶의 방식

툰드라 지역 밖에서 사는 새로운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다양한 직업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레닌그라드의 유명한 헤르젠 연구소 (Herzen Institute)에서 행해지는 고등 교육의 전반적인 역할은 포리스트 에네츠인들에게는 거의 중요하지 않았지만, 인근의 이가르카(Igarka)에 있는 지방대학(училище) 또는 두딘카에 있는 기술대학(техникум)이 새로운 직업을 제공해 주었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언어 공동체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했으며 몇몇 에네츠인들은 실제로 에네츠어가 사용되지 않는 타이미르 반도의 다른 지역(소련과 러시아의 그 밖의 지역)에 정착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붉은 군대(Red Army)'에서 근무하는 것은 동독 또는 캄차트카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장기간 체류(그 당시 3년)하는 것을 의미했다. Pika(1999)는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언어문제에 대한 고정 관념이 너무 순진할 수도 있겠지만, 기숙학교에서 교육받은 세대는 툰드라 지역의 언어가 적절하지 않은 새로운 삶속에서 러시아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교육을 계속 받게 될거라고 지적했다(Pika, 1999: 123-132). 툰드라에서의 순록의 번식과 삶은 남성들 사이에서 권위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sup>4)</sup>, 이것은 여성이나 심지어 가족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 IV. 동화의 결과

### 1. 세대간 정체성의 혼동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러시아어 동화의 결과는 Siegl(2013)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포타포보 지역에서 언어 다양성은 공개적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러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문장을 듣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가끔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현지 상점에 들어올 때 모국어로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다. 러시아어 이외의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보통 가장 나이가 든 포타포보 주민인 경우이다. 포타포보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주자들에게 이런 상황은 드문 일이다. 마을의 거주자인 포타포보의 한 여성과 결혼한 젊은 돌간 남자는 Siegl에게 이 마을은 아직도 수수께끼라고 말했다.

*“제가 온 하탄가 지역(Xatanga rajon)에서 우리 모두는 돌간어로 말하고 돌간어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돌간 사람은 보통 돌간 사람과 결혼했지만, 이 현상은 더 이상 구소련 시대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모두 러시아어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화 과정을 비판하지만, 보통 지난 50년 동안 포타포보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일반적으로 포리스트 에네츠인들은 그들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든간에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래에도 포타포보에는 에네츠인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견해는 두딘카에 살고있는 에네츠인들도 공유합니다. "민족어가 죽어가는 반면에도 에네츠인의 정체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포리스트 에네츠인이 된다는 개념이 이미 변화되었거나 적어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중심적인 요소로서 언어 개념은 강조되고 있으며, 비록 자신들이 민족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년 세대들은 민족어를 말할 줄 아는 것이 민족적 분류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더 이상 민족어를 사용하지 않는 몇몇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언어 외에도 국적이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유산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4) 1970년대 후반 포타포보(Potapovo)와 그 주변에서 시작된 이른바 스노우 모빌 혁명은 북부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자신들을 에네츠인으로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의 요소가 된다고 믿는다.

## 2. 포리스트 에네츠어 관련 문법서의 필요성

다른 사모예드(Samoyedic) 언어와 비교했을 때, 에네츠어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에네츠어를 다룰 생각이었지만 타이미르 반도의 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두 개의 에네츠어 중에서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문법 기술에 집중했다(Siegl, 2007a, 2010 참조). 동일 언어 또는 인접 언어로 작업한 러시아 연구자들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2008년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언어 문서의 관점에서 포리스트 에네츠어에 대한 연구를 했다(Gippert et al 2006; Himmelmann 1998). 이와 관련하여 Siegl의 연구는 초기 연구자들이 수집 한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모예드(Samoyedic) 언어에 대한 전통적, 문헌학적 접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포리스트 에네츠어가 문서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20-40 년 전에 발표 된 바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 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어학적 설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신 언어가 여전히 언어 사용자에게 의해 기억되어있는 한, 이 시점에서 언어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필수적이다. 포리스트 에네츠어가 기능적으로 멸종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언어사용자 세대의 문법이 이미 약간의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법이 바뀌면 이전 연구의 설명을 평가하기 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핵심 문법에 대한 문법적 설명은 기본적인 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음운론, 형태학 및 통사론 측면에서 개요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일반 언어학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자료를 제시하며, 실제로 사모예드어 관련 분야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설명은 사모예드어 전문가(Samoyedologists)로 구성된 대상층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유라시아 북부의 언어 또는 일반 언어의 구조에 관심이 있는 더 많은 대중에게도 유효하다. 또한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문법에 기초적인 이론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면, 전문 용어 없이 문법적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문법에 대한 기능적 접근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서의 후반 부분에는 포리스트 에네츠와 관련한 언어 분류, 언어 접촉 상황, 민족학 및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주제의 요약본을 제공하고 에네츠어 연구의 간략한 역사를 제공하는 것도 요구된다.

## V. 결론 - 언어를 잃는다는 것

지난 2백 년 동안 언어의 절멸을 초래하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언어의 절멸은 생태계에서의 종 다양성 소멸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 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생태계 위기의 한 징후가 된다고 한다. 생명체의 생존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종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종 다양성은 생물학적 생태의 지속과 상속이 가능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은 대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도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어 다양성의 소멸 현상도 인류

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끌어와 쓸 수 있는 잠재적인 지적 기반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류의 환경 적응력이 현저히 감소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서승현, 2015).

또한 특정 언어의 소멸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약용 식물, 동물 행동, 기상 신호 및 사냥 및 수집 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 또한 위협 받고 있다. 종교적 신념, 구전 이야기, 노래 등 풍부한 사전 지식을 갖춘 구두 전통은 그 소수 민족 뿐 아니라 인류과 과학 모두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Sengupta(2009: 17)는 언어는 사고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꿈꾸는 것과 같은 인간의 기초적인 정신적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언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고 언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는 정체성의 관점, 공평성의 관점, 다양성의 관점이라는 세 가지 넓은 분야로 분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다양성은 인간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지혜를 구현하는 인류 유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어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Reaume, 2000: 250). 따라서 소수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들이 구축해온 그들의 영혼의 사원이자 나아가 인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절멸의 과정을 밟고 있는 포리스트 에네츠어의 위기 상황은 인류 지적 상속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말하지 않은 언어는 멸종 될 것이다. 운이 좋다면 사라진 나비의 건조 표본이 박물관 표본실에 남아있는 것처럼, 전문 사전 편집자의 사전에 보존 될 수 있다. 불행한 경우에는, 그 언어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기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언어의 소멸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애도된다. 환경론자나 동물학자들이 종의 다양성의 상실을 비난하듯이, 인간행동의 학생, 사회과학자, 언어학자들은 우리 세계문화의 풍요로움에 언어의 상실을 한탄한다. 자신의 일, 가족 관계, 뿌리 깊은 믿음을 반영하는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언어의 사멸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행성의 이질적 특성은 동질성을 향한 지속적인 경향에 의해 도전받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은 소수 언어들의 소멸에 의해 도전 받는다'(Hale, 1992)는 Hale의 말을 되 씹어볼 필요가 있다.

## &lt;참고문헌&gt;

- Gippert, Jost, Nikolaus P. Himmelmann & Ulrike Mosel (eds). 2006.  
*Essentials of Language Documentation.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Monographs 178.*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Hale, Kenneth. 1992. "Language Endangerment and the Human Value of Linguistic Diversity," *Language*, Vol. 68, No. 1,
- Himmelmann, Nikolaus P. 1998. "Documentary and Descriptive Linguistics." *Linguistics* 36: 161-195.
- Pika, Aleksandr (ed.) 1999. *Neotraditionalism in the Russian Far North-Indigenous Peoples and the Legacy of Perestroika.* Circumpolar Research Series 6. Canadian Circumpolar Institute.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Reaume, Denise. 2000. "Official Language Rights: Intrinsic Value and the Protection of Difference," in Will Kymlicka and Wayne Norman (ed.),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Sengupta, Papia. 2009. "Endangered Languages: Some Concer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4, No. 32,
- Siegl, Florian. 2007. *Contemporary Forest Enets: a report from recent fieldwork.* *ÉFO*: 21-50.
- 2008. "A note on personal pronouns in Enets and Northern Samoyedic." *LU XLIV*: 119-130.
- 2010. *How to prepare for fieldwork - a Forest Enets based retrospective.* Paula Kokkonen & Anna Kurvinen (eds):  
 Kenttäretkistä tutkimustiedoksi. UH 4. 213- 240.
- 2012. "More on possible Forest Enets-Ket contacts." *Eesti ja soome-ugri keeleteaduse ajakiri*. 3(1): 327-341.
- 2013. *Materials on Forest Enets, an Indigenous Language of Northern Siberia*, Société Finni-Ougrienne: Helsinki.
- Tammiksaar, Erki & Ian R. Stone. 2007. *Alexander von Middendorff and his expedition to Siberia (1842-1845).* *Polar Record* 43 (226): 193-216.
- Василев, В. И. 1963. *Лесные энцы - очерк истории, хозяйства и культуры.* Сибир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V.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Этнологии: Новая серия 84. 33-70
- 1979. Проблемы формирования северосамодийских народностей. Москва: Наука.

Гусев, В. Ю. *Энецкий язык*. <http://lingsib.unesco.ru/ru/languages/enets.shtml.htm>

Долгих, Б. О. 1962. *Родовая экзогамия у нганасан и энцев*. Сибир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 сборник IV.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Этнологии: Новая серия 78. 197-225.

----- 1970. *Очерк по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ненцев и энцев*. Москва: Наука.

Пивнева, Е. А. & Д. А. Функ (eds) 2005. *В поисках себя - Народы Севера и Сибири в постсоветских трансформациях*. Москва: Наука.

Helimskij, Eugen. 1985. "Die Feststellung der dialektalen Zugehörigkeit der encischen Materialien". *Dialectologia Uralica: Materialien des ersten Internationalen Symposions zur Dialektologie der uralischen Sprachen*. 4. 7. September 1984 in Hamburg. Veröffentlichungen der Societas Uralo-Altaica.

서승현. 2015. "러시아 북극권의 절멸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어 -코미어와 네네츠어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권 3호.

<http://www.unesco.org/languages-atlas/index.php>

[https://en.wikipedia.org/wiki/Enets\\_language](https://en.wikipedia.org/wiki/Enets_language)

##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기사 제목 내용분석 (2014년7월~2018년12월 러시아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계 용 택

### I. 들어가는 말

그동안 우리나라의 북극연구는 우리나라 및 유럽,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주로 해왔다. 북극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해왔다. 주로 북극에 대한 소규모·단발적인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解氷)으로 인한 북극항로 이용, 자원개발 등 북극의 새로운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고려된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의 실효성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문, 정책·과학·산업이 융·복합된 북극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극항로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북극항로 개발은 러시아 북극항로 연안의 석유, 천연가스, 원목 등 자원개발과 수송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북극항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한 실천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항로 자체는 정치, 경제, 외교적 의미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인 시베리아가 거대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게 될 통로이다<sup>1)</sup>.

또한 북극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 및 가스를 보유한 러시아와의 자원개발사업 참여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로모노소프 해령 인근에는 무려 1,000억 톤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sup>2)</sup>되고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도 북극연구 분야에는 쇄빙선 건조 등의 과학기술 분야, 수산자원 확보 분야,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항행 기술 및 극지용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이 북극 연구 및 개발에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북극에 대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 국가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그 나라의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다량의 언론매체 기사의 선별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작업을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키워드 텍스트

1) 김선래,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국시베리아연구』 제 19권 1호(2015) p. 37.

2) U.S. Geological Survey, 2008

분석일 경우 빈도수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마이닝 기법등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2014년7월부터 2018년12월까지 4년6개월 동안 발생한 약 220만 건의 방대한 러시아 기사 가운데 ‘북극’이라는 키워드로 기사제목을 검색하여 추출한 기사 1998건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언론에 나타난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정도 및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북극관련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는지를 고찰하여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실질적일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기사 제목이란 기사 내용을 요약 대표하되, 독립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춘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전체 기사의 요약 및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쓴 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제목의 기능으로 기사의 광고 및 색인 기능, 기사의 가치 판단 기능, 내용의 압축·전달 기능 및 지면의 미적 균형 기능 등이 있다<sup>3)</sup>.

통상적으로 기사의 본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예, 내용의 압축·전달 기능 혹은 본문 요약 기능)을 제목의 본질적 기능으로 본다. 하지만 아무리 사실 위주의 객관적인 기사라 하더라도 아이템 선별에서부터 어떤 사안이 기사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사 제목에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sup>4)</sup>

기사의 제목은 언론사 내부에서 벌어진 게이트 키피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제목은 독자에게 현재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의제설정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이밍의 기능도 한다.

기사 제목은 기사 본문을 해석하는 데 스키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기사 제목이 본문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틀(프레임)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사내용 중 일부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기사제목이 기사 내용을 요약 대표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다는 전제로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3) Baskette, F. K., Sissors, J. Z., and Brooks, B.S., *The Art of Editing* (New York: Macmillan, 1986).

4) 유흥식, “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3(5), (서울: 한국언론학회, 2009), pp. 177-199.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년6개월에 걸쳐 수집한, 29개의 러시아 언론매체에서 인터넷으로 공개된 약 220만 건의 뉴스 중에서 “북극”을 키워드로 기사제목이 검색된 뉴스 1998건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러시아 언론매체에서 러시아의 4개 통신사가 주된 뉴스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언론매체들도 방송, 신문을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이며 러시아에서 대표적인 언론매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러시아의 일반 언론매체들도 대부분의 뉴스소스를 통신사에 의지하기 때문에 러시아 전체규모의 분석일 경우 뉴스선택에서 개별 언론매체의 특성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분석대상이 된 기사의 언론매체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 통신사(4개사) : 인터팩스([www.interfax.ru](http://www.interfax.ru)), 이타르타스([www.itar-tass.com](http://www.itar-tass.com)), 렌타뉴스([www.lenta.ru](http://www.lenta.ru)), 리아노보스치([www.ria.ru](http://www.ria.ru))

\* 러시아 인터넷 뉴스(6개사) : 24시간 뉴스([www.24rus.ru](http://www.24rus.ru)), 전러시아 뉴스([www.allrussia.ru](http://www.allrussia.ru)), 오늘의 뉴스([www.dni.ru](http://www.dni.ru)), 프라임 뉴스([www.1prime.ru](http://www.1prime.ru)), 러시아 뉴스([www.newsru.com](http://www.newsru.com)), 아침 뉴스([www.utro.ru](http://www.utro.ru))

\* “러시아 방송사(2개사) : 엔테베([www.ntv.ru](http://www.ntv.ru)), 에하모스크비(<http://echo.msk.ru>),

\* 러시아 신문사(6개사) : 러시스카야 가제타([www.rg.ru](http://www.rg.ru)),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www.kp.ru](http://www.kp.ru)), 모스크보브스키 콤소몰레츠([www.mk.ru](http://www.mk.ru)), 니자비시마야 가제타([www.ng.ru](http://www.ng.ru)), 코메르상트([www.kommersant.ru](http://www.kommersant.ru)), 베다모스치([www.vedomosti.ru](http://www.vedomosti.ru))

\* “지역 언론사(5개사) : 사할린 뉴스([www.sakhalin.info](http://www.sakhalin.info)), 시베리아 뉴스([www.sia.ru](http://www.sia.ru)), 우랄 뉴스 ([www.uralinform.ru](http://www.uralinform.ru)), 블라디보스톡 뉴스 ([www.vlc.ru](http://www.vlc.ru)), 졸라토이 로그(극동뉴스) [www.zrpress.ru](http://www.zrpress.ru).

\* 전문지등 기타언론사(6개사) :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팅그룹 뉴스 ([www.rbcdaily.ru](http://www.rbcdaily.ru)), 러시아 정치뉴스([www.polit.ru](http://www.polit.ru)), 러시아 금융뉴스([www.finmarket.ru](http://www.finmarket.ru)), 전야 뉴스([www.nakanune.ru](http://www.nakanune.ru)), 석유가스 뉴스([www.neftegaz.ru](http://www.neftegaz.ru)), 브즈글라드-상업뉴스([www.vz.ru](http://www.vz.ru)).

#### 1. 분석 프로세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다량의 자료 확보 및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심층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는 러시아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가? (특정주제 관련 기사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특정주제에 국민들이 가지는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

●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제목을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비중은 어떠한가? (언론의 기사제목별 카테고리 빈도수를 파악하여 특정 주제의 기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는 지난 4년6개월 동안 어떠한 변화흐름을 보이는가?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해 분석대상 기사제목 1998건을 개별 분석하여 북극군사, 북극자원, 북극개발, 북극외교, 북극문화, 북극안보, 북극생태환경, 북극학술, 북극과학기술, 북극기후, 북극관광, 북극생활, 북극어업, 북극선박항해, 북극내륙교통, 북극원주민, 기타 등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카테고리별 분류의 사례들이다:

● 북극군사 : Арктические мотострелки Севфлота на учениях с боем высадились на Новосибирских островах (북방함대 기계화보병부대는 전투훈련으로 노보시비리 섬들에 상륙하다)

● 북극자원 : РФ будет добывать большую часть нефти и газа в Арктике (러시아는 대부분의 석유 및 가스를 북극에서 조달할 것이다)

● 북극개발 : В РФ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Арктики (러시아에서 아마도 북극발전부가 설립될 수도 있다)

● 북극안보 :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зведка усилила наблюдение за Арктикой (미국은 북극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다)

● 북극학술 : Сибирские ученые доказали существование древнего континента Арктида (시베리아 학자들은 고대 북극대륙의 존재를 증명하다)

● 북극생태환경 : В Арктике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природоохранные зоны (북극에서 자연보호지대 수립을 제안하다)

● 북극과학기술 : Испытания лазера для резки арктических льдов начнут в России и в ноябре (11월에 러시아에서 북극얼음 절단을 위한 레이저 실험이 시작될 것이다)

● 북극외교 :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а сегодн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инистерской встрече Аркт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на Аляске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오늘 알래스카에서 북극위원

회의 장관모임에 참여하다)

- ◎ 북극기후 : В Арктике нашли "климатическую бомбу" (북극에서 "기후폭탄"을 발견하다)
- ◎ 북극어업 : В Арктике введен временный запрет на вылов рыбы (북극에서 일시적으로 물고기 포획을 금지하다)
- ◎ 북극문화 : Таймыр готовится к III Арктическому фестивалю (타미미르에서 3차 북극축제를 준비하다)
- ◎ 북극관광 : В Арктике начал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й сезон (북극에서 관광시즌이 시작되었다)
- ◎ 북극생활 : Тюменские ученые планируют наладить сери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дуктов для жителей Арктики (튜멘의 학자들은 북극주민들의 생활용품 생산계획을 마련하다)
- ◎ 북극선박항해 : Судходным компаниям могут запрет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азута в качестве топлива в Арктике (해운회사들에 대해 북극에서의 중유연료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 ◎ 북극원주민: Ученые исследуют проблемы адаптации детей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Арктики к городской жизни (학자들은 북극원주민의 아이들이 도시생활 적용에 수반되는 문제를 연구하다)

#### IV 분석 결과

표 1 2014년 7월1일 ~ 2018년 12월31일까지 분기별 북극기사 건수 및 비율

기간	전체기사건수	북극기사건수	북극기사 비율(%)
2014년 하반기(6개월)	499,758	623	0.124
2015년 상반기(6개월)	309,286	293	0.094
2015년 하반기(6개월)	262,866	223	0.084
2016년 상반기(6개월)	235,459	152	0.064
2016년 하반기(6개월)	229,896	159	0.069
2017년 상반기(6개월)	201,437	229	0.114
2017년 하반기(6개월)	193,321	164	0.084
2018년 상반기(6개월)	163,184	99	0.061
2018년 하반기(6개월)	131,801	56	0.042
2014년7월~2018년12월(4년6개월)	2,227,008	1,998	0.089

2014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분석대상 기사 2,227,008건중 1998건만이 북극관련기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기사에 대한 비율이 0.089퍼센트로 매우 적은 건수이다. 분석 해당년도 분기별 북극관련 뉴스의 비율을 보면 2104년도에 0.114퍼센트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하반기까지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다고 2017년 상반기에 0.114퍼센트로 급등하였다가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2014년 7월1일 ~ 2018년 12월31일까지 기사제목 카테고리별 건수 및 비율

제목내용	기사건수 (비율)	제목내용	건수 (비율)
북극군사	449건 (22.4%)	북극기후	66건 (3.3%)
북극개발	273건 (13.6%)	북극어업	48건 (2.4%)
북극자원	243건 (12.1%)	북극문화	33건 (1.6%)
북극안보	177건 (8.9%)	북극관광	29건 (1.4%)
북극학술	143건 (7.1%)	북극생활	27건 (1.3%)
북극생태환경	141건 (7%)	북극선박항해	13건 (0.6%)
북극과학기술	122건 (6.1%)	북극내륙교통	4건 (0.2%)
북극외교	120건 (6%)	북극원주민	3건 (0.1%)
기타	107건 (5.3%)	전체건수 (비율)	1998건 (100%)

2014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분석대상 북극관련기사 1998건 중에는 북극군사 관련기사가 22.2퍼센트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북극개발, 북극자원, 북극안보 관련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을 안보에 필요한 군사기지 및 자원의 보고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북극영토 수호 및 확장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극활용에 필요한 북극학술활동 및 북극과학기술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북극생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의 북극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절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및 유럽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극선박항해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이는 북극항로가 러시아 국내물류환경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선박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극의 환경오염문제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분기별로 나누어 각분기별 북극관련기사 제목을 카테고리 별로 기사건수를 표시한 도표이다. 이 도표는 지난 4년6개월 동안 북극관련 기사내용 발생빈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의 도표는 위에서 제시한 표들을 종합하여 각분기별 북극관련 기사 중에 카테고리별 비중을 제시한 도표이다. 이 도표를 통해 지난 4년6개월 동안 북극관련 기사내용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 각각의 기간별 카테고리별 기사제목 건수

a=(2014년 7월1일 ~ 2014년 12월31일) b=(2015년 1월1일 ~ 2015년 6월30일)  
 c=(2015년 7월1일 ~ 2015년 12월31일) d=(2016년 1월1일 ~ 2016년 6월30일)  
 e=(2016년 7월1일 ~ 2016년 12월31일) f=(2017년 1월1일 ~ 2017년 6월30일)  
 g=(2017년 7월1일 ~ 2017년 12월31일) h=(2018년 1월1일 ~ 2018년 6월30일)  
 i=(2018년 7월1일 ~ 2018년 12월31일)

내용/기간	a	b	c	d	e	f	g	h	i
북극군사	181	89	63	33	23	24	19	12	8
북극개발	76	48	26	13	20	40	36	8	6
북극자원	108	37	26	19	18	18	15	12	1
북극안보	50	23	21	20	20	18	5	9	11
북극학술	24	25	13	9	23	23	16	4	5
북극생태환경	46	12	14	7	16	18	13	10	5
북극과학기술	20	19	13	11	12	19	16	11	1
북극외교	50	6	17	7	3	20	3	5	8
기타	17	18	11	10	10	19	5	11	5
북극기후	15	7	12	10	6	9	4	2	1
북극어업	1	5	8	5	5	7	9	3	1
북극문화	15	3	1	2	0	1	6	4	1
북극관광	6	0	4	4	2	6	6	1	0
북극생활	13	1	1	1	0	0	8	3	0
북극선박항해	0	0	3	1	1	5	2	1	0
북극내륙교통	0	0	0	0	0	1	1	2	0
북극원주민	1	0	0	0	0	1	0	1	0
전체건수	623	293	223	152	159	229	164	99	56

표 4) 각각의 기간별 기사제목 내용 구성 비율(단위 %)

a=(2014년 7월1일 ~ 2014년 12월31일) b=(2015년 1월1일 ~ 2015년 6월30일)  
 c=(2015년 7월1일 ~ 2015년 12월31일) d=(2016년 1월1일 ~ 2016년 6월30일)  
 e=(2016년 7월1일 ~ 2016년 12월31일) f=(2017년 1월1일 ~ 2017년 6월30일)  
 g=(2017년 7월1일 ~ 2017년 12월31일) h=(2018년 1월1일 ~ 2018년 6월30일)  
 i=(2018년 7월1일 ~ 2018년 12월31일) j= 전체기사(2014년 7월1일 ~ 2018년 12월31일)

내용/기간	a	b	c	d	e	f	g	h	i	j
북극군사	29.1	30.4	28.3	21.7	14.5	10.5	11.6	12.1	14.3	22.6
북극개발	12.2	16.4	11.7	8.6	12.6	17.5	22	8.1	10.7	13.7
북극자원	17.4	12.6	7.2	12.5	11.3	7.9	9.1	12.1	1.8	12.2
북극안보	8.1	7.8	9.4	13.2	12.6	7.9	3	9.1	19.6	8.9
북극학술	3.9	8.5	5.8	5.9	14.5	10	9.8	4	8.9	7.1
북극생태환경	7.4	4.1	7.6	4.6	10.1	7.9	7.9	10.1	8.9	7.0
북극과학기술	3.2	6.5	5.8	7.2	7.5	8.3	9.8	11.1	1.8	6.1
북극외교	8.1	2	7.6	4.6	1.9	8.7	1.8	5.1	14.3	6.0
기타	2.7	6.1	4.9	6.6	6.3	8.3	3	11.1	8.9	5.3
북극기후	2.4	2.4	5.4	6.6	3.8	3.9	2.4	2	1.8	3.3
북극어업	0.2	1.7	3.6	3.3	3.1	3.1	5.5	3	7.1	2.4
북극문화	2.4	1	0.4	1.3	0	0.4	3.7	4	1.8	1.6
북극관광	1.0	0	1.8	2.6	1.3	2.6	3.7	1	0	1.4
북극생활	2.1	0.3	0.4	0.7	0	0	4.9	3	0	1.3
북극선박항해	0	0	1.3	0.7	0.6	2.2	1.2	1	0	0.6
북극교통	0	0	0	0	0	0.4	0.6	2	0	0.2
북극원주민	0.2	0	0	0	0	0.4	0	1	0	0.1
전체건수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북극군사관련 기사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 30.4퍼센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7년 상반기까지 1/3수준을 감소하다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도 하반기에 14.3퍼센트에 머물렀다. 북극개발관련 뉴스는 2017년 하반기 22퍼센트 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들어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북극자원관련 뉴스는 2014년 하반기에 최고로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18년 말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유가의 변동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북극안보 관련 기사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8년 말에 19.6퍼센트라는 최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극의 영토문제와 관련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의 움직임에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극생태환경관련 기사는 2016년 하반기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7년에 들어와 8퍼센트 이상의 안정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북극관련 외교기사는 2017년 하반기에 1.8퍼센트 최저점을 기록하다가 2018년 하반기에 14.3퍼센트라는 최고비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북극활용과 영토수호를 위해 외국과의 외교활동 강화에 기인한 바로 볼 수 있다. 북극관광 관련 기사는 2017년 하반기까지 꾸준한 증가로 3.7퍼센트까지 도달했으나 2018년 들어와 그 비율이 대폭 하락하였다. 북극선박항해 관련 기사는 2017년 상반기 2.2퍼센트를 기록한 이후 2018년 말에는 관련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극원주민 관련 기사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전 기간을 거쳐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라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4년6개월 동안 북극에 대한 러시아 정부 및 언론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가 연구의 중심이다. 2014년 하반기 러시아는 북극영토의 확장 및 자원개발을 위한 군사력강화, 북극안보, 북극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군사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북극문화나 북극생활에 대한 러시아 언론이나 정부의 관심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에 관심이 있는 북극선박항해에 대한 이해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 언론 및 정부의 태도는 2018년 말까지 4년6개월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국제적인 관심사인 북극어업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 언론 및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북극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첫째로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선박운행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매우 적으므로 한국은 러시아보다 유럽과의 북극선박운행에 대해 협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러시아의 북극 군사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은 해상기지, 군주둔지, 군비행장, 군항만기지 건설 및 극지용 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잠수정 등의 공동개발을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로 북극 내륙지역 개발에서 한국은 원자력 쇄빙선 건조를 비롯하여 극지용 특수복 및 수중 구조장비, 제작에 자본 및 기술 협력도 중단 없이 해야만 한다. 북극학술 연구 분야도 러시아는 꾸준히 이행되어 오기 때문에 한국도 기존의 북극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로 북극 대륙붕 영유권을 둘러싸고 북극연안국인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그린란드 등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극권 국가는 아니지만 유엔을 비롯하여 북극 관련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국제저유가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극의 석유 및 가스등의 자원개발에 대해 움직임이 2014년 하반기보다는 주춤하였으나 여전히 개발은 진행되므로 한국은 북극 대륙붕 조사 등 북극 및 시베리아에서의 석유 및 가스개발에 꾸준한 참여가 필요하다.



## &lt;참고문헌&gt;

- 감미아·송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사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8(3), 2012.
- 김선래,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국시베리아 연구』, 제 19권 1호, 2015.
- 유흥식, “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53(5), 2009.
- 정철호, “국내 솔루션 기반 빅 데이터 구축전략 및 사례”, 『정보 속으로』, Vol.76, SEP-OCT, 2012.
- Baskette, F. K., Sissors, J. Z., and Brooks, B.S. , 『*The Art of Editing*』, New York: Macmillan, 1986.
- Scheufele, D. A. ,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 3(2&3), 2000.
- Tankard, J. W.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S. D. Reese, O. H. Gandy, Jr.,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3.
- U.S. Geological Survey, 2008.
- 24시간 뉴스([www.24rus.ru](http://www.24rus.ru))
- 니자비시마야 가제타([www.ng.ru](http://www.ng.ru)),
- 러시스카야 가제타([www.rg.ru](http://www.rg.ru))
- 러시아 금융뉴스([www.finmarket.ru](http://www.finmarket.ru))
- 러시아 뉴스([www.newsru.com](http://www.newsru.com))
-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팅그룹 뉴스([www.rbcdaily.ru](http://www.rbcdaily.ru))
- 러시아 정치뉴스([www.polit.ru](http://www.polit.ru))
- 렌타뉴스([www.lenta.ru](http://www.lenta.ru))
- 리아노보스치([www.ria.ru](http://www.ria.ru))
- 모스크보브스키 콤포몰레츠([www.mk.ru](http://www.mk.ru))
- 베다모스치([www.vedomosti.ru](http://www.vedomosti.ru))
- 브즈글라드-상업뉴스([www.vz.ru](http://www.vz.ru)).
- 블라디보스톡 뉴스([www.vlc.ru](http://www.vlc.ru))
- 사할린 뉴스([www.sakhalin.info](http://www.sakhalin.info))
- 석유가스 뉴스([www.neftegaz.ru](http://www.neftegaz.ru))
- 시베리아 뉴스([www.sia.ru](http://www.sia.ru))
- 아침 뉴스([www.utro.ru](http://www.utro.ru))
- 에하모스크비(<http://echo.msk.ru>)
- 엔테베([www.ntv.ru](http://www.ntv.ru))
- 오늘의 뉴스([www.dni.ru](http://www.dni.ru))
- 우랄 뉴스([www.uralinform.ru](http://www.uralinform.ru))
- 인테르팍스([www.interfax.ru](http://www.interfax.ru))
- 이타르타스([www.itar-tass.com](http://www.itar-tass.com))
- 전러시아 뉴스([www.allrussia.ru](http://www.allrussia.ru))
- 전야 뉴스([www.nakanune.ru](http://www.nakanune.ru))

졸라토이 로그(극동뉴스) ([www.zrpress.ru](http://www.zrpress.ru))

코메르상트([www.kommersant.ru](http://www.kommersant.ru))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www.kp.ru](http://www.kp.ru))

프라임 뉴스([www.1prime.ru](http://www.1prime.ru))

# I. 북극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2017년 12. 1. 제정

제1조(명칭) 본 연구기관은 ‘북극학회(가칭,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 성장 공간인 북극지역에 관련된 융복합 학술 연구 및 각종 정책과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 소재지 내에 둔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극 관련 지정, 지정, 지문화 및 생태환경에 관련된 융복합 학술 연구 사항
2. 북극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출판 업무
3. 북극 관련 국책 사업 및 정책, 전략 기획 참여 사업 사항
4. 북극 관련 자료,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북극 관련 국내외의 공인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었던 자
  3. 기타 위 각호의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③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관련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2. 북극 관련 국내외의 공인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었던 자
  3. 기타 위 각호의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④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 ⑤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

## 제6조(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장 및 총무의 선출권을 지닌다.

③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 등 일체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학회지 등 학회 발간물과 학회보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⑤ 모든 회원은 매 회계년도별로 소정의 연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년도에는 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지 못 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②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조직 및 구성

## 제8조(조직)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기획 및 대외협력, 편집출판 팀을 두어 운영한다.

② 전항의 각 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기획: 연구활동, 자료 DB 구축, 학술회의, 연구사업 기획, 실행
2. 대외협력: 대외기관과의 교류 기획, 실행.
3. 편집출판: 학술지 및 도서 출판 기획, 발간
4. 사무국

제9조(임원) 본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 1 인
2. 수석부회장 2 인
3. 부회장: 20인 이내
4. 총무이사 1 인
5. 연구기획이사 1 인
6. 대외협력이사 1 인
7. 편집출판이사 1 인
8. 감사: 2 인
9. 행정간사 1 인

제10조(기구 및 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 1. 총회
- 2. 회장단 회의
- 3. 이사회

②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이사회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기타 본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전적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사무국에는 총무이사과 행정간사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본회에는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 1. 논문심사위원회
- 2. 학회지 편집위원회
- 3. 학술상 시상심사위원회
- 4. 기금관리위원회
-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설치하는 위원회

제11조(고문 및 명예회장)

- ①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 ① 회장은 임기만료 전에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③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회장 및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임원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임원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동 퇴임한다.

제16조(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연장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결위 시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이사의 직무)

- ①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 1. 학회보 및 학회지 발간
  - 2. 연구발표회 및 홍보업무
  - 3. 국제관계
  - 4. 자료수집
  - 5. 총무 및 경리업무의 감독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9조(자문위원회)

- ① 본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 위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로 구성되며 학회의 제반 사업에 대해 자문한다.

제20조(연구원 및 보조원) 본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5.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6. 전차회의록의 접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건명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도 통지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의결제적사유)

-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위임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 한다.
  - 1. 임원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구성)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안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총회부의안
- 3. 본회의 해산,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 4. 회원자격의 인정 및 회원가입승인
- 5.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 6. 고문위촉을 위한 동의
- 7. 지부사무국 또는 부문별 연구위원회의 설치
- 8. 재산의 관리운영
-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의결 제적사유)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이사회에도 준용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부의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내용, 의결주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부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소집의 특례를 가진다.

##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학회 회비
2. 연구활동, 프로젝트 기획 및 참여 활동을 통한 수입
3. 보조금 및 지원금
4. 기타수입

제31조(기금운용 및 적립금)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예산, 결산, 사업계획)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회비의 용도)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및 자료 보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행사를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7장 보칙

제35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정관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1. 본 정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II. 북극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17년 12. 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극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를 통하여 출간되는 학술잡지와 학술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학회장이 지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학회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교외 인사를 20%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8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기피,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확인한다.
2. 전항의 확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심의, 의결, 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5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편집진**

<p><b>한종만(韓種萬, Han, Jong-Man)</b>  <b>북극학회 회장</b>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                  e-mail: jmhan@pcu.ac.kr</p>	<p><b>김정훈(金正勳, Kim, Joung-Hun)</b>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                  e-mail: jhkrm@pcu.ac.kr</p>
<p><b>계용택(桂鏞澤, Ke, Yong-Tek)</b>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러시아리서치 센터 대표                  e-mail: dovri@hanmail.net</p>	<p><b>박종관(朴鍾寬, Park Jong-Kwan)</b>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연구교수                  e-mail: parkjk7377@naver.com</p>
<p><b>배규성(裴奎星, Bae Kyu Sung)</b>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 연구교수                  e-mail: baeks777@naver.com</p>	<p><b>서승현(徐承顯, Seo, Seunghyun)</b>                  미국 Indiana University 슬라브언어학 박사                  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e-mail: seoseung5@hanmail.net</p>
<p><b>양정훈(梁庭熏, Yang, Junghun)</b>                  러시아외교아카데미 국제정치학 박사                  현) 수원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hyang@suwon.ac.kr</p>	<p><b>예병환(芮秉煥, YAE Byung-Hwan)</b>                  독일 Bamberg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대구대학교 강사                  e-mail: yaebh@pcu.ac.kr</p>
<p><b>이재혁(李在赫, Yi, Jae-Hyuk)</b>                  독일 키일대학교/경희대학교 지리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e-mail: yijenie@hanmail.net</p>	<p><b>백영준(白榮準, Baek, YoungJun)</b>  <b>편집 행정간사</b>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아스타피예프 국립                  사범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kiseling@daum.net</p>

**배흥규**  
**조교**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 전공  
 연락처: 042)520-5713  
 e-mail: korsib21@daum.net

## 자문위원

이병화	주 노르웨이/주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대사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홍성조	극지연구소 자문위원

## [공지 사항]

- 본 잡지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7년 11월 11일 북극연구단을 확대하여 ‘북극학회(Artic Academy)’가 창설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 5월 31일 배재대학교 정동빌딩 역사박물관에서 ‘북극학회’ 창립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동년 7월 6일 경기도 안산 농어촌개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제 2회 학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북극학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당부드립니다.  
학회 정보 및 회원가입 문의:
  - 박종관 학회 대외협력이사(e-mail: [parkjk7377@naver.com](mailto:parkjk7377@naver.com))
  - 백영준 연구원 (e-mail: [kiseling@daum.net](mailto:kiseling@daum.net))
- ‘북극연구 13호’부터 편집 주체가 ‘북극연구단’에서 ‘북극학회’로 전이되었음을 공지합니다.